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94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한창민 · 신장식 · 윤종오
정혜경 · 전종덕 · 용혜인
황명선 · 김종민 · 김남근
김현정 · 손 술 · 정춘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기존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또한 현행법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여 공무원은 직무 외 영역에서도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등 일반 시민에 비해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무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함. 실제로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수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독일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허용하고, 캐나다는 공무원고용법 제113조에서 공무원이 직무 외의 범위에서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안 제49조).
- 나.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57조제1항 삭제 등).
- 다.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삭제).
- 라. 직무 외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안 제5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

룰안」(의안번호 제112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9조까지”를 “제57조까지, 제5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7조 및 제58조”를 “제57조와 제57조의2의 단서”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를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정당”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정치적 행위”를 “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 공무원은 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83조 중 “제42조·제43조 또는 제58조”를 “제42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u>제59조까지</u> ,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 ----- ----- ----- ----- ----- ----- <u>제57조까지, 제59조</u>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u>제57조 및 제58조</u>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 ----- ----- ----- <u>제57조와 제57조의2의 단서</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제49조(복종의 의무) ----- -----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부당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삭제>

②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

1. ~ 5.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이-----
-----.

<삭제>

제57조의2(정치적 표현과 활동의 자유) 공무원은 정치적 표현과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
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
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
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3조(벌칙) 제42조·제43조 또
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83조(벌칙) 제42조 또는 제43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